

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우진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07. 6. 11

발 의 자 : 우진석·김익수·윤서규
이갑선·허복·이정임
임춘구·김영호·박순이 의원(9인)

1. 제안이유

- 시정 및 의정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·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『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』의 제명이 전·현직의원의 친목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비추어 질 우려가 있어 그 제명을 『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』로 하고
- 또한 의정회가 그 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『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』를 『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』로 제명 변경
- 의정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단법인 설립하고 의정회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<제2조제2항 신설>
- “의정동우회”를 “의정회”로 개정 <제2조 ~ 제8조>
- 지방자치제도 발전방안 연구 등 목적사업 추가 <제3조>

3. 참고사항

- 타 시군 의정회 제정 및 개정 현황 : 경주시의회(2006.10.16 개정)

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”를 “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구미시 의정동우회(이하“의정동우회”)의”를 “구미시의정회(이하“의정회”)의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, 제2항, 제3항중 “의정동우회”를 “의정회”로 하고,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동조에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②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사업)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시·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홍보
2.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 및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·연구
3.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연구
4.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4조, 제5조제1항, 제6조제1항·제2항, 제7조제1항, 제8조제1항·제2항·제3항의 각각의 “의정동우회”를 각각 “의정회”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운영규정)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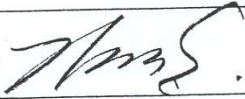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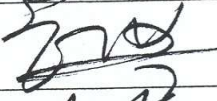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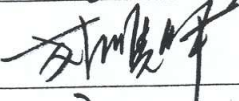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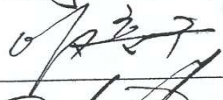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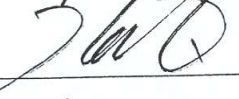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명 : <u>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</u>	제명 : <u>구미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</u>
제1조(목적) ----- <u>구미시 의정동우회(이하"의정동우회")의</u> ----- -----	제1조(목적) ----- <u>구미시의정회(이하"의정회")의</u> ----- -----
제2조(구성 및 운영) ① <u>의정동우회</u> 는 ----- <u><신 설></u>	제2조(구성 및 운영) ① <u>의정회</u> 는 -----
② <u>의정동우회</u> 는 회장1인, 부회장 약간명을 둔다.	② <u>의정회</u> 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.
③회장과 부회장은 <u>의정동우회</u> 에서 호선한다.	③ <u>의정회</u> 는 회장1인, 부회장 약간명을 둔다.
제3조(사업) <u>의정동우회</u> 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	제3조(사업) <u>의정회</u> 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의 연구 및 홍보.	1. 시 ·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홍보
2.기타 <u>의정동우회</u> 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.	2. 지방자치제도 개선 과제 및 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·연구
	3.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연구
	4.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<u>의정회</u> 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4조(보조금의 교부) 구미시는 <u>의정동우회</u> 가 -----	제4조(보조금의 교부) 구미시는 <u>의정회</u> 가 -----
제5조(회장의직무등) ①----- <u>의정동우회</u> 를 -- <u>의정동우회</u> 의- ② (생략)	제5조(회장의직무등) ①----- <u>의정회</u> 를 -- <u>의정회</u> 의----- ②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제6조(회의) ①회장은 <u>의정동우회</u>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②<u>의정동우회</u>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제7조(간사) ①<u>의정동우회</u>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 ② (생략) 제8조(운영위원회) ①<u>의정동우회</u>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추천하여 <u>의정동우회</u>의 의결로 선임하고, 회장과 부회장, 간사는 당연직이 된다. ③운영위원회는 <u>의정동우회</u>에서 위임된 안건 등을 심의하며, 그 결과를 <u>의정동우회</u>에 보고한다. 제9조(운영규정) <u>의정동우회</u>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의 범위 내에서 <u>의정동우회</u>의 정관으로 정한다.	제6조(회의) ①회장은 <u>의정회</u>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②<u>의정회</u>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제7조(간사) ①<u>의정회</u>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 ②(현행과 같음) 제8조(운영위원회) ①<u>의정회</u>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추천하여 <u>의정회</u>의 의결로 선임하고, 회장과 부회장, 간사는 당연직이 된다. ③운영위원회는 <u>의정회</u>에서 위임된 안건 등을 심의하며, 그 결과를 <u>의정회</u>에 보고한다. 제9조(운영규정)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<u>이사회</u>의 의결을 거쳐 <u>회장이 따로 정한다</u>.

「구미시 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발의(제출) 의원

서명날인부

성명	서명(날인)	비고
김익수		
유지석		
윤서강		
허복		
박수이		
이강신		
임재우		
김영호		
이재민	